

소방방재청고시제 2006-16 호

물분무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 방 방 재 청 장

물분무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4)
水噴霧消火設備の火災安全基準(NFSC 104)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소화설비인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1 条(目的) この基準は、水噴霧等消費設備である水噴霧消火設備の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必要な事項を定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 2 조(적용범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 조제 1 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 5 호의 규정에 따른 물분무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第 2 条(適用範圍) 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以下“法”という。)第 9 条第 1 項および同法律施行令(以下“令”という。)星印 4 消火設備の消防施設適用基準欄第 5 号の規定による水噴霧消火設備は、この基準で定める規定により設備を設置し維持、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 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第 3 条(定義) この基準で使う用語の定義は、次のとおりである。

1. “물분무헤드”라 함은 화재시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확산시켜 미립상태로 분무함으로써 소화하는 헤드를 말한다.
1. “水噴霧ヘッド”とは、火災時、直線流または螺旋流の水を衝突、広めて米粒状態で噴霧するもので、消火するヘッドをいう。
2. “고가수조”라 함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 “高架水槽”とは、構造物または地形地物などに設置して自然落差圧力で給水する水槽をいう。
3. “압력수조”라 함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3. “圧力水槽”とは、消火用水と空気を満たして一定圧力以上で加圧してその圧力で給水する水槽をいう。
4. “급수배관”이라 함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물분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4. “給水配管”とは、水源および屋外送水口から水噴霧ヘッドに給水する配管をいう。
5. “진공계”라 함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5. “真空計”とは、大気圧以下の圧力を測定する計測器をいう。
6. “연성계”라 함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6. “連成計”とは、大気圧以上の圧力と大気圧以下の圧力を測定できる計測器をいう。
7. “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7. “起動用水圧開閉装置”とは、消火設備の配管内圧力變動を検知して自動的にポンプを起動および停止させるものとして、圧力チャンバーまたは起動用圧カスイッチなどをいう。
8. “일제개방밸브”라 함은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
8. “一斉開放バルブ”とは、火災発生時、自動または手動式起動装置によりバルブを開かれるものをいう。

제 4 조(수원) ①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 4 条(水源) ① 水噴霧消火設備の水源は、その貯水量が次の各号の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 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상으로 할 것) 50㎡) 1㎡에 10ℓ/min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대하여 로
1. 消防基本法施行令星印2の特殊可燃物を保存または取り扱う消防対象物またはその部分において、その底面積(50㎡を超過する場合には50㎡)1㎡に10リットル/minで、20分間放水できる量以上とすること。
2. 차고 또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50㎡를 초과할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ℓ/min 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 2 車庫または駐車場においては、その底面積(50㎡を超過する場合には50㎡)1㎡に対し20リットル/minで20分間放水できる量以上とすること。
3. 절연유 봉입 변압기에 있어서는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 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 3 絶縁油封入変圧器においては、床底の部分を除いた表面的を合わせた面積1㎡に対し10リットル/minで20分間放水できる量以上とすること。
4.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에 있어서는 투영된 바닥면적 1㎡에 12ℓ/min 20분간 방수로 대하여 로

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4 케이블트레이, 케이블ダクトなどにおいては、投影された底面積 1㎡に対し 12リットル/min で、20分間放水できる量以上とすること。

5. 콘베이어 벨트 등에 있어서는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 로 20 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5. コンベアベルトなどにおいては、ベルトの部分の底面積 1㎡に対し 10リットル/min で 20分間放水できる量以上とすること。

②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水噴霧消火設備の水源を水槽で設置する場合には、消防設備の専用水槽で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次に各号の 1 に該当す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1. 물분무소화설비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1. 水噴霧消火設備ポンプのフードバルブまたは吸水配管の吸水口(垂直回転軸ポンプの吸水口を含む。以下同じ。)を他の設備(消防用設備以外のことをいう。以下同じ。)のフードバルブまたは吸水口より低い位置に設置した時

2.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第 5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高架水槽から水噴霧消火設備の垂直配管に水を供給する吸水口を他の設備の吸水口より低い位置に設置した時

③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③ 第 1 項の規定による貯水量を算定するときにおいて、他の設備と兼用して水噴霧消火設備用水槽を設置する場合には、水噴霧消火設備のフードバルブ、吸水口または垂直配管の吸水口と違った設備のフードバルブ、ホース口または垂直配管の吸水口との間の数量をその有効数量とする。

④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 水噴霧消火設備用水槽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1. 点検に便利なところに設置すること。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凍結防止措置をしたり凍結の憂慮がない場所に設置すること。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水槽の外側に水位計を設置すること。ただし、構造上避けられない場合には、水槽のマンホール等を通して水槽の中の水の量を簡単に確認でき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4. 水槽の上段が床面より高い時には、水槽の外側に固定式はしごを設置すること。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5. 水槽が室内に設置された時には、その室内に照明設備を設置すること。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6. 水槽の下の部分には、清掃用排水バルブまたは排水管を設置すること。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7. 水槽の外側の見やすいところに"水噴霧消火設備用水槽"と表示した表紙をすること。この場合、その水槽を他の設備と兼用する時には、その兼用される設備の名前を表示した表紙を一緒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8. 물분무소화설비의 흡수배관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물분무소화설비펌프가 설치되고 물분무소화설비에 제 5 조제 1 항제 13 호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水噴霧消火設備の吸水配管または水噴霧消火設備の垂直配管と水槽の接続の部分には、"水噴霧消火設備用配管"と表示した表紙をすること。ただし、水槽と近い場所に水噴霧消火設備ポンプが設置され、水噴霧消火設備に第 5 条第 1 項第 13 号の規定による表紙を設置した時にはこの限りでない。

제 5 조(가압송수장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치)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 5 条(加圧送水装置) ① 電動機または内燃機関によるポンプを利用する加圧送水装置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って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1. 点検に便利で火災などの災害による被害を受ける憂慮がない所に設置すること
2. 펌프의 1 분당 토출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ポンプの1台あたりの吐出量は、次の基準により設置すること。
- 가.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 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1㎡당(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10ℓ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ア 消防基本法施行令星印 2 の特殊可燃物を保存、取り扱う消防対象物またはその部分においては、その底面積 1㎡当たり(50㎡を超過する場合には 50㎡) 10リットルをかけた量以上になるようにすること。

나. 차고 또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1㎡당(50㎡를 초과하는 50㎡) 2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경우에는

イ 倉庫または駐車場においては、その底面積1㎡当たり(50㎡を超過する場合には50㎡)に20リットルをかけた量以上になるようにすること。

나. 절연유 봉입 변압기에 있어서는 바닥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ウ 絶縁油封入変圧器においては、底面積を除いた表面的を合わせた面積1㎡当たり10リットルをかけた量以上となるようにすること。

라.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에 있어서는 투영된 바닥면적 1㎡당 12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エ ケーブルトレー、ケーブルダクトなどにおいては、投影された底面積1㎡当たり12リットルをかけた量以上になるにすること。

마. 콘베이어 벨트 등에 있어서는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オ コンベアベルトなどにおいては、ベルトの部分の底面積1㎡当たり10リットルをかけた量以上になるようにすること。

3.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ポンプの揚程は、次の式により算出した数値以上になるようにすること。

$$H = h_1 + h_2$$

$$H = \text{펌프의 양정(m)} \quad h_1 = \text{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h_2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4.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4. 凍結防止措置をしたり凍結の憂慮がない場所に設置すること。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ポンプは専用ですること。ただし、他の消火設備と兼用する場合、それぞれの消火設備の性能に支障がない時にはこの限りでない。
6.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ポンプの吐出側には、圧力計をチェックバルブ以前にポンプ吐出側 flange から近いところに設置して、吸入側には連成計または真空計を設置すること。ただし、水源の水量がポンプの位置より高かったり、垂直回転軸ポンプの場合には連成計または真空計を設置しないこともある。
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加圧送水装置には、定格負荷運転時ポンプの性能をテストするための配管を設置すること。ただし、チューンアップポンプの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加圧送水装置には、締切運転時水温の上昇を防止するための循環配管を設置すること。ただし、チューンアップポンプの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9. 起動用水圧開閉装置(圧力チャンバー)を使う場合、その容積は100L以上のものとする。
10.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10. 水源の揚程がポンプより低い位置にある加圧送水装置には、次の基準による水揚装置を設置すること。
 -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ア 水揚装置には、専用の水槽を設置すること
 -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イ 水槽の有効数量は100リットル以上とすること、口径15mm以上の吸水配管により当該水槽に水が供給し続けられるようにすること。
11.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11. 起動水压開閉装置を起動装置でとして使用する場合には、次の各目の基準によるチューンアップポンプを設置すること。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ア ポンプの吐出圧力は、その設備の最高位ホース接続口の常時圧より少なくとも0.2MPaがより大きいようにするか、加圧送水装置の全吐出圧力と同じにすること。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물분무소화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イ ポンプの全吐出量は、正常な漏洩量より少なくではなく、水噴霧消火設備が自動的に作動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十分な吐出量を維持すること。

12.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12. 内燃機関を使う場合には、制御盤により内燃機関の自動起動および手動起動が可能で、常時充電されている蓄電池設備を備えること。

13. 가압송수장치에는 "물분무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13. 加圧送水装置には、"水噴霧消火設備ポンプ"と表示した表紙をすること。この場合、その加圧送水装置を他の消防設備と兼用する時には、その兼用される設備の名前を表示した表紙を一緒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14.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加圧送水装置が起動になった場合には、自動で停止し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高架水槽の自然落差を利用した加圧送水装置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물분무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 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 高架水槽の自然落差水頭(水槽の下段から最高階に設置された水噴霧ヘッドまでの垂直距離をいう。)は、次の式により算出した数値以上になるようにすること。

$$H = h_1 + h_2$$

H : 필요한 낙차(m)

h_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h_2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2. 高架水槽には、水位計、排水管、給水管、オーバーフロー管およびマンホールを設置すること。

③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圧力水槽を利用した加圧送水装置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 圧力水槽の圧力は、次の式により算出した数値以上になるようにすること。

$$P = p_1 + p_2 + p_3$$

P : 필요한 압력(MPa)

p₁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MPa)

p₂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p₃ : 낙차의 환산수두압(MPa)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2. 圧力水槽には、水位計、給水管、排水管、吸気管、マンホール、圧力計、安全装置および圧力低下防止のための自動式空気圧調整機を設置すること。

제 6 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는 등)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第 6 条(配管等) ① 配管は、ペ・クァニョン炭素鋼管(KS D 3507)または配管内使用圧力が

1.2MPa 以上の場合には、圧力船寛容炭素鋼管(KS D 3562)と、これと同等以上の強度、耐食性および耐熱性を持ったもの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場所には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性能試験技術基準に適合した消防用合成樹脂配管で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1. 配管を地下に埋設する場合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2. 他の部分と耐火構造で区切られたダクトまたはフートの内部に設置する場合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 天井(上階がある場合には上階床底の下段を含む。以下同じ。)と天井板を不燃材料または準不燃材で設置して、その内部に湿式で配管を設置する場合

②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물분무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② 給水配管は専用で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水噴霧消火設備の起動装置の操作と同時に他の設備の用途に使う配管の送水を遮断でき、水噴霧消火設備の性能に支障がない場合には、他の設備と兼用することができる。

③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ポンプの吸入側配管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1. 空気高であることができない構造にしてろ過装置を設置すること。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2. 水槽がポンプより低く設置された場合には、各ポンプ(チューンアップポンプを含む。)ごとに水槽から別に設置すること。

④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連結送水管設備の配管と兼用する場合の主配管の口径は、100mm以上、放水口に連結される配管の口径は、65mm以上の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⑤한개의 일제개방밸브가 담당하는 유량은 8,300ℓ/min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⑤ 一個の一斉開放バルブが担当する流量は、8,300 リットル/min 以下でなければならない。

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ポンプの性能は、縮切運転時、定格吐出圧力の 140%を超過しなく、定格吐出量の 150%で運転時、定格吐出圧力の 65%以上であり、ポンプの性能試験配管は、次の各号の基準に適合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1. 性能試験配管は、ポンプの吐出側に設置された開閉バルブ以前で分岐して設置し、流量測定装置を基準で、枝配管部に開閉バルブを後段直管部には流量調節バルブを設置すること。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2. 流量測定装置はも性能試験配管の直管部に設置するものの、ポンプの定格吐出量の 175%以上測定できる性能があること。

⑦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加圧送水装置の縮切運転時水温の上昇を防止するために吐出バルブとポンプ間で分岐した口径 20 mm以上の配管に縮切圧力未滿で開放されるリリーフバルブ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⑧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⑧ 凍結防止措置をしたり凍結の憂慮がない場所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⑨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吸水配管に設置されて吸水を遮断できる開閉バルブは、開閉表示型で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ポンプの吸入側配管には、バタフライバルブ以外の開閉表示型バルブ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⑩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⑩ 吸水配管に設置されて吸水を遮断できる開閉バルブには、そのバルブの開閉状態を監視制御盤から監視されるように吸水開閉バルブ作動表示スイッチを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1. 吸水開閉バルブが閉まる場合、テーパスイッチの動作によって監視制御盤または受信機に表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で警報音を発すること。

2. 탬퍼스witch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확인 및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2. テーパスイッチは、監視制御盤で動作の有無確認と動作試験、導通試験ができること。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3. 吸水開閉バルブの作動表示スイッチに使われる電気配線は、耐火電線または耐熱電線で設置すること。

⑪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⑪ 機械室、共同溝またはダクトに設置される配管は、他の設備の配管と簡単に区分になることができる位置に設置するかその配管表面または配管保温材表面の色を別にする方法などで消防用設備の配管であること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7 조(송수구)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 7 条(送水口) 水噴霧消火設備には、消防ポンプ自動車からその設備に送水できる送水口を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1. 送水口は、火災階から地面に落ちるガラス窓などが送水およびその他の消火作業に支障を与えない場所に設置すること。

2. 송수구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2. 送水口から水噴霧消火設備の主配管に達する連結配管に開閉バルブを設置した時には、その開閉状態を簡単に確認および操作できる屋外または機械室などの場所に設置すること。

3. 구경 65 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3. 口径 65 mmの双鉤型ですること。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送水口には、その近いところの見やすいところに送水圧力範囲を表示した表紙をすること。

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 상을 설치할 것

5. 送水口は、一つの階の底面積が 3,000 m²を越えるたびに 1 個(5 個を越える場合には 5 個とする。)以上を設置すること。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 地面から高さが 0.5m 以上 1m 以下の位置に設置すること。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7. 送水口の近い部分に自動排水バルブ(または直径 5 mmの排水工業)およびチェックバルブを設置すること。この場合、自動排水バルブは、配管内の水がよく陥る位置に設置するものの、排水によって他の物または、場牛に被害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제 8 조(기동장치) ①물분무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 8 条(起動装置) ① 水噴霧消火設備の手動式起動装置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1. 直接操作または遠隔操作によりそれぞれの加圧送水装置および手動式開放バルブまたは加圧送水装置および自動開放バルブを開放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設置すること。

2.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起動装置の近いところの見やすい所に"起動装置"と表示した表紙をすること。

②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自動式起動装置は、自動火災報知設備の感知器の作動または閉鎖型スプリンクラーヘッドの開放と連動して警報を発して、加圧送水装置および自動開放バルブを起動でき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自動火災報知設備の受信機が設置されている場所に常時の人が勤めていて、火災時水噴霧消火設備を自動的に作動させ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제 9 조(제어밸브 등) ①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 기타 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 9 条(制御バルブ等) ① 水噴霧消火設備の制御バルブその他バルブ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1. 制御バルブは、底から 0.8m 以上 1.5m 以下の位置に設置すること。

2.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制御バルブの近く見やすいところに"制御バルブ"と表示した表紙をすること。

②자동 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自動開放バルブおよび手動式開放バルブ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1. 自動開放バルブの起動操作部および手動式開放バルブは、火災時容易に接近できる所の床から0.8m以上1.5m以下の位置に設置すること。

2.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당해 방수구역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自動開放バルブおよび手動式開放バルブの2次側配管の部分には、当該放水区域以外にバルブの作動をテストすることができる装置を設置すること。ただし、放水区域で直接放射試験ができ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제 10 조(물분무헤드) ①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드)

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第 10 条(水噴霧ヘッド) ① 水噴霧ヘッドは、標準放射量で当該防護対象物の火災を有効に消火するのに適切な位置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전기의 절연을 위하여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다음 표에 따른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高圧の電気機器がある場所においては、電気の絶縁のために電気機器と水噴霧ヘッドの間に下表による距離を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전압(kV)	거리(cm)	전압(kV)	거리(cm)
66 이하	70 이상	154 초과 181 이하	180 이상
66 초과 77 이하	80 이상	181 초과 220 이하	210 이상
77 초과 110 이하	110 이상	220 초과 275 이하	260 이상
110 초과 154 이하	150 이상		

제 11 조(배수설비)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第 11 条(排水設備) 水噴霧消火設備を設置するガレージまたは駐車場に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排水設備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1. 車両が駐車する場所の適当なところに、高さ 10 cm以上の区域境界堤で排水口を設置すること。
2.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 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2. 排水口には、もれた油を集めて消火できるように長さ 40m 以下ごとに集水管、消火ピット等油分離装置を設置すること。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 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3. 車両が駐車する床は、排水口に向かって 100 分の 2 以上の傾くを設けること。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4. 排水設備は、加圧送水装置の最大送水能力の水量を有効に排水できる大きさおよび傾きをすること。

제 12 조(전원) ①물분무소화설비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 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第 12 条(電源) ① 水噴霧消火設備には、その消防対象物の受電方式により次の各号の基準による常用電源回路の配線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1. 低圧受電である場合には、引入開閉器の直後で分岐して専用配線とするべきで、専用の電線管に保護されるようにすること。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 차측의 주차단기 1 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 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 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 1 호의 기준에 따 른다.

2. 特別高圧受電または高圧受電の場合には、電力用変圧器 2 次側の主遮断機 1 次側で分岐して、専用配線とするものの、常用電源の常時供給に支障がない場合には、主遮断機 2 次側で分岐して専用配線ですること。ただし、加圧送水装置の定格入力電圧が受電電圧と同じ場合には、第 1 号の基準に従う。

② 물분무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 67 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 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 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水噴霧消火設備の非常電源は、自家発電設備または蓄電池設備(内燃機関によるポンプを使う場 合には内燃機関の起動および制御用蓄電池をいう。)として、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 ばならない。ただし、2 以上の変電所(電気事業法第 67 条の規定による変電所をいう。以下同 じ。)で電力を同時に供給されることができ、一つの變電所から電力の供給が中断される時には、 自動で他の變電所から電源を供給されるように常用電源を設置した場合と加圧水槽方式の場合には この限りでない。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1. 点検に便利で火災および浸水などの災害による被害を受ける憂慮がない所に設置すること。

2. 물분무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 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 水噴霧消火設備を有効に 20 分以上作動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 도록 할 것

3. 常用電源から電力の供給が中断された時には、自動で非常電源から電力を供給されることがで きるようにすること。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 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4. 非常電源の設置場所は、他の場所と防火区画すること。この場合、その場所には非常電源の供 給に必要な機構や設備以外のもの(熱併合発電設備に必要な機構や設備は除く。)を置いてはな らない。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非常電源を室内に設置する時には、その室内に非常照明灯を設置すること。

제 13 조(제어반) ①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

第 13 条(制御盤) ① 水噴霧消火設備には、制御盤を設置するものの、監視制御盤と動力制御盤を区 分して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場合には、監視制御盤と動力制御

盤を区分して設置しないこともある。

1.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물분무소화설비

1. 次の各目の1に該当しない消防対象物に設置される水噴霧消火設備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 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

ア 地階を除いた階数が7階以上として延面積が2,000㎡以上であること。

나. 제 1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イ 第1号に該当しない消防対象物として、地階の底面積の合計が3,000㎡以上であること。ただし、車庫、駐車場またはボイラー室、機械室、電気室などこれと類似の場所の面積は除く。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2. 内燃機関による加圧送水装置を使う水噴霧消火設備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3. 高架水槽による加圧送水装置を使う水噴霧消火設備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3 호 및 제 6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監視制御盤の機能は、次の各号の基準に適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1項各戸の1に該当する場合には、第3号および第6号の規定を適用しない。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1. 各ポンプの作動の有無を確認できる表示灯および音響警報機能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各ポンプを自動および手動で作動させるべき。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자동 또
있어야 하고, 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

3 非常電源を設置した場合には、常用電源および非常電源の供給の有無を確認するべき
で、自動または手動で常用電源または非常電源での転換が可能なこと。

4. 수조 또는 물울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4. 水槽または水挿タンクが低水位になる時表示灯および音響で警報すること。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울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5. 各確認回路(起動用水圧開閉装置の圧カスイッチ回路で、水槽または水挿タンクの監視回路をいう。)ごとに導通試験および作動試験が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6. 予備電源が確保されて予備電源の適合の有無をテストするべきであること。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監視制御盤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1. 火災および浸水などの災害による被害を受ける憂慮がない所に設置すること。

2. 감시제어반은 물분무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 監視制御盤は、水噴霧消火設備の専用です。ただし、水噴霧消火設備の制御に支障がない場合には、他の設備と兼用することができる。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監視制御盤は、次の各目の基準による専用室中に設置すること。ただし、第1項各戸の1に該当する場合、工場、発電所などで設備を集中制御、運転する目的で設置する中央制御室内に監視制御盤を設置す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 한다)로 된 4㎡ 미만의 불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가. 他の部分と防火区画をすること。この場合、専用室の壁には、機械室または電気室等の監視のために厚さ7mm以上の防火ガラス(厚さ16.3mm以上の接合ガラスまたは厚さ28mm以上のペアガラスを包含する。)になった4㎡未満の据付け窓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 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 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 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避難階または地下1階に設置すること。ただし、次の1に該当する場合には、地上2階に設置したり、地下1階以外の地階に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1) 건축법시행령 제 35 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 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1) 建築法施行令第35条の規定により特別避難階段が設置されてその階段(附属室を含む)出入口から歩行の種5m以内に専用室の出入口がある場合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2) アパートの管理棟(管理棟がない場合には警備室)に設置する場合

나.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나. 非常照明灯および級?排気設備を設置すること。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 6 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 5 호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라. 無線通信補助設備の火災安全基準(NFSC 505)第6条の規定による無線機器接続端子(英星印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適用基準欄第 5 号の規定による無線通信補助設備が設置された特定消防対象物に限る。)を設置すること。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オ 底面積は、監視制御盤の設置に必要な面積以外に、火災時消防隊員がその監視制御盤の操作に必要な最小面積以上とすること。

4. 제 3 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4. 第 3 号の規定による専用室には、消防対象物の機械、機構または施設などの制御および監視設備以外のものを置かないこと。

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 動力制御盤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1. 前面は赤色でして"水噴霧消火設備用動力制御盤"と表示した表紙を設置すること

2. 외함은 두께 1.5 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 外箱には、厚さ 1.5 mm以上の鋼板またはこれと同等以上の強度および耐熱性能があるものにする
こと。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3. その他の動力制御班の設置に関しては第 3 項第 1 号および第 2 号の基準を準用すること。

제 14 조 (배선 등) ①물분무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 67 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 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 14 条(配線等) ① 水噴霧消火設備の配線は、電気事業法第 67 条の規定による技術基準で定めるほか、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非常電源から動力制御盤および加圧送水装置に達する電源回路配線は、耐火配線とすること。
ただし、自家発電設備と動力制御盤が同じ室に設置された場合には、自家発電機からその制御盤に達する電源回路配線はこの限りでない。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常電源から動力制御盤に達する配線、その他の水噴霧消火設備の監視、操作または表示灯回路で使用する配線は、耐火配線または耐熱配線です。ただし、監視制御盤または動力制御班内の監視、操作または表示灯回路での配線はこの限りでない。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다.

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る耐火配線および耐熱配線に使われる電線および設置方法は、屋内消火栓設備の火災案前基準(NFSC 102)星印 1 の基準に従う。

③ 물분무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水噴霧消火設備の過電流遮断機および開閉器には、"水噴霧消火設備用"と表示した表紙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물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 水噴霧消火設備用電気配線の両断および接続端子に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表紙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단자에는 물분무소화설비단자 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1. 端子には、水噴霧消火設備端子と表示した表紙を取付ること。

2. 물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2. 水噴霧消火設備用電気配線の両断には、他の配線と識別が容易なように表示すること。

제 15 조(물분무헤드의 설치제외)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물분무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15 条(水噴霧ヘッドの設置除外) 次の各号の場所には、水噴霧ヘッドを設置しないこともある。

1.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1. 水にひどく反応する物質または水と反応して危険な物質を生成する物質を保存または取り扱う場所

2.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 高温の物質および蒸留範囲が広くて沸いてあふれる危険がある物質を保存または取り扱う場所

3.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3. 運転時に表面の温度が260℃以上になるなど直接噴霧をする場合、その部分に損傷を負わせる憂慮がある機械装置などがある場所

제 16 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 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 • 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

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第 16 条(水源および加圧送水装置のポンプなどの兼用) ① 水噴霧消火設備の水源を屋内消火栓設備、スプリンク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火災早期鎮圧用スプリンクラー設備、泡消火設備および屋外消火栓設備の水源と兼用して設置する場合の貯水量は、各消火設備に必要な貯水量を合わせた量以上にな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これら消火設備中、固定式消火設備(ポンプ、配管と水槽または消火薬剤を最終放出する放出口が固定された設備をいう。以同じ。)が 2 以上設置されていて、その消火設備が設置された部分が防火壁と防火戸で区切られている場合には、各固定式消火設備に必要な低数量中、最大の量以上とすることができる。

② 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水噴霧消火設備の加圧送水装置は使用するポンプを屋内消火栓設備、スプリンク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火災早期鎮圧用スプリンクラー設備、泡消火設備および屋外消火栓設備の加圧送水装置と兼用して設置する場合のポンプの吐出量は、各消火設備に該当する吐出量を合わせた量以上にな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これら消火設備中、固定式消火設備が 2 以上設置されていて、その消火設備が設置された部分が防火壁、防火戸で区切られていて、各消火設備に支障がない場合には、ポンプの吐出量の基準の最大のもの以上とすることができる。

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屋内消火栓設備、スプリンク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火災早期鎮圧用スプリンクラー設備、水噴霧消火設備、泡消火設備および屋外消火栓設備の加圧送水装置において、各吐出用配管と一般吸水用の加圧送水装置の吐出用配管を相互に連結して火災時使う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連結配管には、開閉表示型バルブを設置してあるべきで、各消火設備の性能に支障が無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水噴霧消火設備の送水口を屋内消火栓設備、スプリンク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火災早期鎮圧用スプリンクラー設備、泡消火設備、連結送水管設備または連結散水設備の送水口と兼用で設置する場合には、スプリンクラー設備の送水口の設置基準に従うものの、それぞれの消火設備の機能に支障が無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17 조(설치·유지 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 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17 条(設置・維持基準の特例)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既存建築物が増築、改築、大修繕されたり、用途変更される場合において、この基準が定める基準により当該建築物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水噴霧消火設備の配管、配線などの工事が顕著に困難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当該設備の機能および使用に支障がない範囲内で、水噴霧消火設備の設置、維持基準の一部を適用しないこともある。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